

2026년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협업생태계조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

2026. 3.

□ 신청 시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필수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11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첨단 나노복합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해당기관)
12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첨단 나노복합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해당기관)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 반드시 아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본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참고]의 경우 삭제 후 제출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 (서식12) '장비도입 심의요청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의 경우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함, 신청시 작성 대상은 1차년도 구축 예정 장비*에 한하며, 이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연차별로 해당 연도의 도입예정 장비 심의요청서 추가 제출 필요
- * 3천만원(도입금액 기준) 이상 ~ 1억원(국비 기준) 미만 장비에 한함

연구개발계획서				[V]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V], 보안[]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사업명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협업생태계조성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00 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선정방식		정책지정[] 지정공모[V]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 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직장전화		국가연구자번호				
			전자우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단계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n년차								
2단계	1년차								
	2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역할	기관유형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지자체 등)			책임자				공동		
			실무자				지자체	○○도	
			실무자				지자체	○○시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div>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V]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div> <div>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과제 선정 및 협약식 변경 기입).</div> <div>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div> <div>10.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div> <div>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하며,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div> <div>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div> <div>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div> <div>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div>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div><div>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div>(※ 별첨 RFP를 참조하여 과제별 사업기간에 따라 n년차, n+1년차 등의 경우 표 등을 가감하여 수정, 이하 계획서 내용 작성시 동일 적용)</div></div></div> <div>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div>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div><div>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div><div>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div><div>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div></div> <div>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div>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div><div>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div></div> <div>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div> <div>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div>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div><div>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립”으로 기재합니다.</div><div>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div><div>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div><div>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div><div>6) 컨소시엄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div></div> <div>19. 기관유형<div>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div><div>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div><div>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div><div>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div>(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div><div>(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div><div>(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div><div>(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div><div>(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div></div><div>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div><div>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div><div>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div><div>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div><div>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div><div>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div><div>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div><div>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div></div> <div>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가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력이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div> <div>21. 기관장 서명: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만 직인으로 날인하고,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div>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제출 시 신청번호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협업생태계조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O]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제출 시 신청번호로 작성)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1년차	목표	
		내용	
	2년차	목표	
		내용	
	n년차	목표	
		내용	
2단계	1년차	목표	
		내용	
	2년차	목표	
		내용	
	n년차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과제 선정 및 협약시 기입).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제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자,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I. 수행계획	0
1. 과제 개요	0
1) 산업(기술) 개요	0
2) 국내·외 산업동향	0
3) 국내외 정책 현황	0
4) 국내외 네트워크 현황	0
2. 과제 필요성	0
1) 정부지원 필요성	0
2) 산업 연계효과	0
3) 사업추진 역량	0
4) 과제 유사·중복성 검토	0
3. 과제 목표 및 내용	0
1) 최종 목표	0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0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0
4) 추진내용	0
5) 수행일정	0
4.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0
1) 추진전략·방법	0
2) 추진체계	0
3)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방법	0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1) 성과 활용방안	0
2) 기대 효과	0

목 차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0
1. 연구개발기관 현황	0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0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0
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0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0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0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0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	0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5)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0

I. 수행계획

1. 과제개요

1) 산업(기술) 개요

가. 정의 및 범위

나. 특성

다.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2) 국내·외 산업동향

가. 시장동향

나. 기술동향

다. 기업동향

3) 국내외 정책 현황

가. 국내 정책 현황

나. 국외 정책 현황

4) 국내외 네트워크 현황

가. 국내 네트워크 현황

나. 국외 네트워크 현황

2. 과제 필요성

1) 정부지원 필요성

가. 자체해결 한계점

나. 정부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제출 시 삭제)

- 자체해결 한계점은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재
- 정부지원 기대효과는 산업·기업성장 등 정량 기대효과(근거 포함) 중심으로 서술

2) 산업 연계효과

가. 산업·기업 연계효과

3) 사업추진 역량

가. 주요 사업추진 실적

기관명	사업내용 및 활용현황	연도	지원기관
	○ 과제명 : ○ 내용 : ○ 활용현황 :		

(제출 시 삭제)

- 연구개발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및 본 사업 기여효과를 서술

나. 인적 자원 현황

다. 기타 자원 현황

(제출 시 삭제)

- 동 과제와 연관된 네트워크 현황 등을 서술

4) 과제 유사·중복성 검토

○

연도	부처	연구 책임자/ 기관	연구명	동 사업 추진과제와의 차별성

■ NTIS 차별성 검토 서비스를 통해 도출된 유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차별성 검토 대상(유사과제) 검색결과					
※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1. 본 검색결과는 과제요약정보의 주요 텍스트를 비교하여 도출된 차별성 검토 참고자료입니다. 2. 최종적인 차별성 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3. 기수행과제 DB는 체결된 과제협약 정보를 반영하여 현행화되므로 검색시점에 따라 기수행과제 검색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조건	검색일시	2024/04/04 17:20:01			
	검색연도	2002년 ~ 2024년			
	기준 차별성 점수 *등록과제와 검토 대상과제의 차별화된 키워드 비중 점수로 기준 차별성 이상인 문서만 표시	40 점 (유사도: 60점)			
결과요약	등록과제수	1 건			
	차별성 검토필요 과제수	0 건			
세 부 검 색 결 과 (범례: 5~9개 10개 이상)					
순번	과 제 명	유사과제분포			
1	기수행과제	0	0	0	0
		30점대	20점대	10점대	10점 미만
	공공R&D과제	0	0	0	0
		30점대	20점대	10점대	10점 미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주1) 기수행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수행되거나 수행되고 있는 과제(조사분석 수집 과제·현업과제정보) 주2) 공공R&D과제 :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국가 R&D 예산으로 수행된 과제를 제외한 그 외 R&D 과제					
국 가 과 학 기 술 지 식 정 보 서 비 스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결과					
과제명 :					
순번	과제명	구분	수행연도	연구책임자	차별성점수
1		수행	2018		30.8 (유사도: 69.2)
1		수행	2017		30.8 (유사도: 69.2)
1		수행	2020		31.98 (유사도: 68.02)
1					31.98 (유사도: 68.02)
1		수행	2023		35.9 (유사도: 64.1)
1		수행	2022		37.39 (유사도: 62.61)
<div>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div> <div>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div> <div> 부) 순차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연구기관)의 차등점수 부여 구) 순차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연구기관)의 차등점수 부여 구) 순차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연구기관)의 차등점수 부여 구) 순차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연구기관)의 차등점수 부여 </div>					
국 가 과 학 기 술 지 식 정 보 서 비 스					

3.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 매우 상세 기재

가. 과제 목표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목표를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주관연구기관 역할 및 목표

- ~~~~~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

- ~~~~~

< 최종목표 및 수행내용(요약) >

구분	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비중	수행내용
		0 ~ 00건 수행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0	0	0
		-	0	0
합계	-		100	-

(제출 시 삭제)

- 상기 구분에서 제시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표, 비중(총합이 100), 세부목표 등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 각 과제별 RFP의 '사업목표'를 참고하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함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가.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총괄)_RFP에 따라 작성

○ (그래핀 산업화 네트워크, 나노융합 산업조사_제출 시 삭제)

구분	성과지표		비중 (%)	연차별 목표					
				계	1단계			2단계	
					1차	2차	3차	1차	2차
	필수		0						
	자율		0						
	...		0						
			0						
			0						
			0						
			0						
			0						
			0						
			0						
			0						
			0						
합계									

○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허브 구축_제출 시 삭제)

구분	성과지표		비중 (%)	연차별 목표					
				계	1단계				
					1차	2차	3차	4차	5차
기반구축 공통	필수	장비구축							
	필수	장비가동률							
	필수	공동활용도							
	필수	수혜자 만족도							
	필수	시설장비 투입 대비 수익금 비율							
	자율								
	...								
기술서비스	필수	공동협력 과제 발굴							
	필수	전주기 기술지원							
	필수	End-user 수요충족							

구분	성과지표		비중 (%)	연차별 목표					
				계	1단계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원 플랫폼 운영	자율								
	...								
	필수	표준 프로세스 정립							
	필수	전문가 풀 활용							
	자율								
기타	...								
	자율								
	...								
합계			100						

(제출 시 삭제)

- 성과지표는 과제별 별첨 RFP 내 <과제목표 및 내용>를 참조하여 작성
- 목표치 설정시 앞의 "1) 최종목표", 뒤의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과 일관성 있고 연결되도록 작성
- 전체 지표의 비중 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선택 성과지표)의 경우 추가 작성 가능

나.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기관	구분	성 과 지 표	비 중 (%)	연차별 목표					
				계	1단계	2단계			
					1차	1차	2차	3차	4차
	기반구축 공통								
	기술서비스								
	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파급								
합계			100						

- 수행기관별 역할에 맞게 성과지표를 설계·배분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가. 성과지표 목표 및 설정근거

성과지표	목표 및 산출근거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방법	성과증빙
장비구축 건수	◦ (예시) ○○○장비 등 00종 구축	◦(예시) 해당 장비의 필요성 및 수량 산출 근거(수요조사 자료 제시 등)		장비별 NFEC 등록증
장비가동률	◦ (예시) 최종 장비가동률 00% 이상 - 1차년 : 00% - 2차년 : 00% - 3차년 : 00%	◦(예시) 00 장비의 특성상 과제 수행 기간 내 00%가 최적의 목표인 근거	◦ 측정산식 : $\{ \sum(\text{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 \text{시설장비 가용시간}) \} / \sum(\text{가동률 계산 장비})$ ◦ 측정대상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장비 ◦ 측정방법 : 장비별 사용일지 전수조사	i-Tube 장비가동일지
자율지표	◦ ◦	◦ ◦		
	◦ ◦	◦ ◦		

(제출 시 삭제)

- 과제 특성에 따라 성과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성과지표 설정근거를 제시

4) 추진 내용

가. 주요내용

(제출 시 삭제)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내용을 준용할 것

나. 연차별 상세 추진내용

- 1단계 1차년도
 - 세부 목표
 - 주요 내용 및 범위 (세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추진내용 및 범위 기재)
- 1단계 2차년도
 - (이하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 1단계 3차년도
 - (이하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 2단계 n차년도
 - (이하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

5) 수행일정

가. 1단계 1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 1단계 2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2단계 n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제출 시 삭제)

- 과제 수행일정은 연도별 추진 내용과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재

4.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방법

- (그래핀 산업화 네트워크, 나노융합 산업조사_제출 시 삭제)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방법 및 체계 자율작성

○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허브 구축_제출 시 삭제)

가. 기반구축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장비구축 방향 및 연차별 구축전략 포함하여 서술(건축, 인증획득 등 지원체계 포함)
- 전문 기반·기술 확보, 특화전략, 전담인력 확보계획 및 확보방안, 전용공간 확보전략 등 상세 작성

나. 시설·장비 도입 및 활용 계획

(1) 기반구축 사업 상세내용

○ 수행내용 (건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 수행내용 (장비구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2)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구성 필요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정부	홍길동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과	당연직
2	전문기관	임격정	실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당연직
3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당연직
4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당연직
5	학계, 연구계, 산업계				선임직
6	주관기관				운영간사

(3)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2					
3					

- 운영위원회는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의대상 장비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연차별 구축장비 목록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초달청 중앙초달계약방식 구매만 인정**)

(단위: 천원/대)

구분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산 가격 (C=A*B)	구축 방식	구입 예정 연월	현금 / 현물
1 단 계	1 차 년 도								구매		
									개발		
2 단 계	2 차 년 도										
3 단 계	3 차 년 도										

차 년 도											
	소 계										
합 계											

- 구축방식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사항 기재
- 구축장비는 [붙임] 구축 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 필수 작성
- 장비사양 및 단가변동은 협약변경 사항(필요시 도입 재심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은 최신 자료(견적서 등)를 확인하여 계상
- 3천만원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의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 장비 도입 심의를 통과하지 않거나, 조달청 공식 문서 없이 임의로 중앙조달계약 방식을 통하지 않을 경우 구입이 불인정됨에 유의

(2) 연구시설·장비 주요 사용 용도(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구분	연구시설·장비명	주요 용도	장비 전담인력	설치장소
1 단 계	1차 년도	■	000 선임	
	2차 년도	■		
		■		
		■		
2 단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3)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계획

(단위: 천원/명)

연구개발 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구분 (기존/신규)	운영기간	비용		활용계획
				연간 운영비	과제 반영비	
			yy-yy			
			yy-yy			

(4) 후보장비 목록

(단위: 천원)

연구개발 기관명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상 가격 (C=A*B)	주요 용도	설치 장소 (세부)
합 계										

- 사업수행 중 장비심의 시 단가 조정, 구축장비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차액 발생 시 우선적으로 구축할 장비 목록 기재
 - 실제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상기 목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담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계획 변경 후 집행 가능
 - 전담기관 담당자는 사전 협의(승인)요청 시 협약기간 내 구축 계획(지출원인행위, 구입예정연월) 등을 검토 예정

라. 경쟁력 확보전략

(1)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 과제수행을 통해 파생되는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

(2)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 전담인력확보 계획은 활용목적이 분명하고, 확보전략[역할(장비운영, 기술서비스 등), 자격조건(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재

(3) 전용공간 확보 전략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작성)

- 위치(주소) :
- 규모 : 부지면적 m^2 , 건축연면적 m^2
- 용도 :

- 전용공간의 면적, 위치, 구조를 상세히 기재하고, 구축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서술
- 별도 제출하는 전용공간 확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2) 추진체계



(제출 시 삭제)

■ 추진 방법 . 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내용별 수행 방법,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 추진 체계

- 수행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 간 연관/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3) 과제 수행 중 일자리 창출 계획 · 방법

가. 일자리 창출 계획 및 효과

- ※ 본 과제 관련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직 · 간접인력(참여연구원 여부)으로 구분하여 서술, 일자리 창출 예상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산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구체화
- ※ 연차별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 ※ 주관/참여기관별 일자리 창출 계획, 채용 예정 인원 및 채용 방법 등에 대해 서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0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0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그래핀 산업화 네트워크, 나노융합 산업조사_제출 시 삭제)

1) 성과 활용방안

(제출 시 삭제)

- 과제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2) 기대효과

(제출 시 삭제)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허브 구축_제출 시 삭제)

1) 성과 활용방안

- 과제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3) 재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가.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성과활용기간 포함)

- 연도별, 세부 기반구축 수행내용별 계획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나.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1단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다. 성과활용기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성과 활용 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수익발생원은 장비활용수익, 전용공간 임차수익, 시험평가인증 수익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해당 수익이 동 사업에 사용가능한 수익원이어야 함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예산은 수익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ex: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주주된 정부사업비)
 - 장비사용 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기재
 -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추정근거는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서비스제공단가 등을 명시할 것
- ex> 10건/연 × 500,000원 = 5,000,000원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허브 구축만 작성_삭제)

1) 안전관리 이행계획

가.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과제 수행기간 동안의 안전책임자를 지정

번호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1)	생년 월일 (YYMMDD)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주관	○○ 연구원	홍길동	책임	610101	남	○○대	1900	안전공학	박사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제정일자, 운영방법 기재하고 없는 경우 제정 계획 등 기재

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만 편성해야 함 (예: 방진복, 안전모, 방진장갑, 폐액 등)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및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미지급액 포함) 총액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함 (출처: 연구실안전관리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
 - 기업부설연구소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인건비 총액의 2% 이하

라.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마.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바. 안전교육 실시 등

- 과제 수행기간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구분	교육 제목	교육대상	교육 내용 상세	수행 일시
1 단 계	1차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신규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이해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안내 	분기별 1회
	2차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보수교육			
2 단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작성, 아닐 경우 삭제)*

가. 과제(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목록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작성

No.	구분	안전사고 사례	발생시점
1	국내		2010년
2	국외(국가명칭)		
3			
...			

○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상세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사고 사례의 상세내용(사고경위, 내용, 피해규모, 조치사항 등) 작성

나. 과제(기술) 관련 안전기준 및 준수 방안

○ 과제 관련 안전기준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법률, 기준, 매뉴얼 등을 작성

No.	안전기준	조항
1		
2		
3		
...		

○ 안전기준 준수 방안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기준의 준수방안(안전 담당자 지정, 규정마련, 점검 및 진단, 교육훈련 등) 작성

다. 과제(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 수행기관 자체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검토, 예측 결과 주요내용을 작성 (필요시 별첨으로 서류 첨부)

- (예시) 평가공정 : 시제품 제작

주요 내용 (연구장비 구축 및 활용 중심)	위험요인	현재의 예방대책	현재의 위험성			개선대책	개선 (예 정) 일자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빈도x 강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 도
예시) 리튬이온 분리막 개발	물반응성 물질 사용으로 폭발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작업구역 지정 및 습도관리	3	3	9	1.온습도 관리용 제습장치 설치	5.4	1	2	2
예시) 탄소강 슬래브 압연제 시제품 절단	공작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공작기계 사용 매뉴얼 작성	3	3	9	1.공작기계 안전 센서 부착	5.4	1	2	2

라.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 과제 수행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수행기관 자체 점검

※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향후 안전관리 이행결과 보고 시, 점검결과 첨부)

○ 과제 종료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안전 책임자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수행기관 안전책임자를 지정

② 수행기관 자체 점검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③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안전진단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본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RFP/품목서 상 ‘안전관리’로 지정된 과제를 의미하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각 명시된 항목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기준 준수 방안,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결과,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작성 참고자료

<참고> 위험성 추정 예시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예시

1.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위험성(Risk) = 노출수준(Probability) × 유해성(Severity)

(빈도)(강도)

<표 1> 노출수준(가능성)

구분	가능성	내 용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표 2> 유해성(중대성)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TLV-TWA)	
		발생형태 : 분진(mg/m³)	발생형태 : 증기(ppm)
대	3	0.01 초과 ~ 0.1 이하	0.5 초과 ~ 5 이하
중	2	0.1 초과 ~ 1 이하	5 초과 ~ 50 이하
소	1	1 초과 ~ 1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표 3> 위험성 추정

노출수준(가능성)\유해성(중대성)	대(3)	중(2)	소(1)
상(3)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2)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1)	보통 (3)	낮음 (2)	낮음 (1)

2.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의 정도
7~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4~6	보통	허용 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3	낮음		현재 상태 유지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영문		국적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제지 (권, 쪽)	게제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35 -

- 36 -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호의 과제는 참여과제 수(3책/5공)에서 제외 (인건비계상물에는 포함), 본 과제 포함한 총 참여과제 수 기재

번호	소속 기관 (역할)	신규/ 기존/ 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성별)	학위 및 전공			상세역할	참여 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물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물 (%) (B)	전체 인건비 계상물 합계 (A+B,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건)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KIAT (주관)	기존	김OO (한국)	팀장	'86.12.02 (남)	박사	전자 공학	'12	책임	'23.4~ 25.12	30%	70%	100%	
2		기존	박OO (한국)	책임	'81.03.02 (여)	박사	컴퓨터 과학	'08	실무책임	'23.9~ 25.12	50%	-	50%	
3	KEIT (공동)	기존	이OO (한국)	수석	'75.03.02 (남)	학사	기계 공학	'95	공동책임	'23.4~ 23.12 '23.4~ 25.12	50% 100%	-	50% 100%	
4	KETEP (공동)	기존	기OO (한국)	선임	'86.03.02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공동책임	'23.4~ 25.12	30%	-	30%	
5		신규	임OO (한국)	선임	'86.03.07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실무	'23.4~ 24.12	30%	-	30%	
6	OO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박사 과정	'88.07.02 (여)	석사	화학 공학	'20	공동책임	'23.4~ 24.12	20%	40%	60%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1년	2년	3년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 (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직위			전자우편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직위			전자우편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

가.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 실적)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 (최근 5년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 (최근 5년 실적)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 ¹⁾	사업화 형태 ²⁾	지역 ³⁾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 이어야 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기관명 (주관/공동/위탁)		현금	%	현금	현물	소계	%	현금	현물	소계	%			
연차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년차														
	소계													
1단계 2년차														
	소계													
1단계 n년차														
	소계													
총계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인건비	일반1)	특례2)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나.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n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n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공동연구개발기관명1: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n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공동연구개발기관명2: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n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수행역량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수혜학생 기재)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외우)”,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라) 수혜학생은 담당역할에 “수혜학생”으로 기재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정인력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수혜학생(행정 조교 등)에 대해 기재)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정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가. 1단계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인건비 계상률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제출 시 삭제)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급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천원)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연구시설· 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div>○ 가나다</div> <div>○ 가나다</div>				
주요 내용				
<div>○ 가나다</div> <div>○ 가나다</div>				
활용계획				
<div>○ 가나다</div> <div>○ 가나다</div>				
용역기관 선정기준				
<div>○ 가나다</div>				

■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 장 명				
출 장 국 가				
출 장 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 장 기 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나. 1단계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2단계 n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 1단계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인건비 계상률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제출 시 삭제) ■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급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현금)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 장비 임차비						
	연구시설. 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 내용					
○ 가나다					
○ 가나다					
활용계획					
○ 가나다					
○ 가나다					
용역기관 선정기준					
○ 가나다					

(제출 시 삭제) ■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 장 명				
출 장 국 가				
출 장 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 장 기 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

- 가나다
- 가나다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 가나다
- 가나다

나. 1단계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2단계 n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연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연구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처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임차()		구입구분	내자(○) 외자()
구입(임차)일자(예정)		20XX. 5		구입(임차)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후 결정()			
연구 시설· 장비 개요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가능 지원			
	주요사항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기관 ○○팀에서 관리 및 운용할 계획이며, 전담인력 ○○○ 등 2명 내외 활용 예정 추가적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202X년 신규채용 예정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구매 시) 타 기관 소유장비 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작성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삭제) >

-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은 장비명과 일치하도록 장비명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전체연구개발기간 중 3천만원 이상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작성함(구입, 임차 모두)
- 상기 기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참고>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동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 단계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상시점검수수료 및 정산수수료를 책정된 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책정

- 연차별 상시점검 수수료 : 현 정산수수료의 85% 수준 적용

* 상시점검 정의에 따른 분기별 상시점검 추진 및 상시점검 보고서 제출

- 정산수수료 :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정산수수료의 15%씩 가산하여 책정

(예시) 3년 일괄정산과제의 경우 : 매년 <정산수수료 표준액> 기준 정산수수료 산정

구분	상시점검수수료	정산수수료	연차가산	비고
1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2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3차년도 (최종)	X	○	○	3차년 정산수수료 + 1차년 정산수수료 15% + 2차년 정산수수료 15%

○ 정산수수료 표준액

구분(연구개발비 규모*)	단가(천원)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예: 지방비)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을 경우 : 1,185,0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1,303,5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1,362,75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3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2(20%가산)=1,422,000원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소(홍길동), ○○대학(김영수)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
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
 행 정보 등 신용조회
 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연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 연구근접지원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 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illegible]

150 151 152

한국 산업 기술진흥원장 귀하

-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
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n차년도 (202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n차년도 (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 현물납입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현금·현물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세부사업명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n차년도 (202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n차년도 (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202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대표자명	(인)
		책임자	연구책임자명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명)	(인)

※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현물로 전용공간을 부담할 경우 관련 공문을 첨부

(서식 제12호)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연구개발기관)

* 심의요청 기관별로 작성

* 심의요청 기관의 장비가 여러대일 경우 <표지> + A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 B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 C장비(장비별 작성양식 + 자체검토의견서) 순으로 작성

제출시 해당 안내문구 삭제

장비도입 심의요청서(공동활용장비)

※ 대상장비 : 3천만원(도입금액 기준) 이상 ~ 1억원(국비 기준) 미만 장비에 한함
(1차년도 구축 예정 장비에 한하여 작성)

전 문 기 관		전문기관 담당자				
사 업 명		접수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연락처: (TEL) (H.P) (E-mail)				
총수행기간 (당해연도)	20 (개월) (20)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	지자체부담		민간부담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공동연구개발기관						
심의 요청기관		실무 담당자	(TEL) (H.P) (E-mail)			
<div>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산업기술개발장비를 도입코자 심의를 요청합니다.</div> <div> <div>첨부 : 장비견적서(해당장비, 비교대상장비)</div> <div>* 외자구매의 경우 원제조사견적서</div> </div> <div> <div>20 년 월 일</div> <div> <div>심의요청기관 과제책임자 : (인)</div> <div>심의요청기관장 : (직인)</div> </div> <div>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div> </div>						

[목 차]

I. 도입장비 개요

II. 장비 중복성

1. 중복성 검토
2. 동종장비의 전국분포 현황 검토

III.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연평균 가동률
2. 활용방식
3. 장비관리자
4. 유지보수 계획
5.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IV.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환성
3. 국산장비 검토

V. 수요조사 결과

1. 수요조사 개요
2. 장비별 수요

[첨부] 수행기관 자체검토의견서

<장비별 작성 양식>

도입장비명	한글	※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명칭 또는 해당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영문	※ 표 아래 작성요령 참조

I. 도입장비 개요

※ 도입개요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내용	비고
산업기술개발장비분류체계 (소분류)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1] 소분류 기준 예) A101 광학망원경	
도입가격(예상)	※ 천원(또는 달러)	
제작국가	※ 국내, 해외(해당국가명) 중 선택	
구매방식	※ 일괄구매, 분리구매 중 선택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 장비도입 추진 예상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24.3.31 입찰 : ~2024.5.31 계약 및 입고 : ~2024.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24.8.31	
계약방법 및 절차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에 따름	중앙조달
주요사양		용도
※ 장비의 사양을 기재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장비사양 -또는 사업계획서에 장비의 사양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양을 제시([주의] 견적서 사양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 것) *장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견적서에 표시되는 수준으로 기재(필요시 견적서를 참고하여 기재) *표 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 *수요조사에서 제시한 수요자 및 수요자 생산품목 등에 연계하여 설명 *표 안에 내용을 서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에는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술

※ 도입장비명 작성요령

- ① 일반화된 장비명을 사용
- ② i-Tube 또는 NTIS에 등록된 장비명 사용 :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을 경우에는 i-Tube 또는 NTIS를 통해 심의상정예정인 장비와 가장 유사한 장비명을 사용
- ③ 일반화된 장비명이 없거나, i-Tube 또는 NTIS에서 적당한 장비명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장비 견적서에 명시된 장비명 사용
- ④ 장비견적서의 장비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명함
 - * [중요] 만일 위의 과정을 순서(①~④)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중복성 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함
 - * 장비명이 영문일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 도입가격(예산) 작성요령

* 장비 견적서(부가세 포함)상 금액으로 기재하고, 장비정보시스템(i-Tube) 내 '장비구입금액(예정)'과도 동일한 금액으로 명시

II. 장비 중복성

※ 수행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장비의 사양 및 용도, 수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복성을 검토
 ※ 중복성 검토 사이트(2개 모두 조사 필요) : NTIS(<http://red.zeus.go.kr>)의 시설장비 기획>중복성검토, i-Tube(www.itube.or.kr) 장비이용>같이써요

1. 중복성 검토

가. 검색키워드

※ 검색에 사용된 키워드를 모두 기재

※ 검색키워드 선정 방법

- 장비중복성 검토는 장비명을 구성하는 단어 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단어에 대하여 시행
 예) 단층촬영(CT) X-ray 의 경우 : 검색어는 단층, 단층촬영, CT, X-ray, X-선, X선 등으로 검색
-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시행함

나. 유사장비 목록

※ 중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유사장비 목록 작성

번호	장비명 (국문 또는 영문)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위치)	장비가격 (천원)	중복성검토 키워드
1	A	2005.02.30	가나다	(주)하나 (서울 강남구)	50,000	abc
2	B					
3	C					
4	D					
5	E					
6	F					
7	G					
...	...					

다. 중복 검토 적정성

※ 구축하려는 장비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

구분	A	E	G
장비명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공동활용 가능여부			
장비가격			
활용불가 사유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구체적으로 타당성 제시	

2. 동종장비의 전국분포 현황 검토

장비명 or 검색어		
전국	_____건	_____건
동일지역내	_____건	_____건
평균 가동률	_____%	_____%

III. 장비활용성 및 장비운영 계획성

1. 연평균 가동률

가. 장비유형

※ 심의요청 장비의 해당 유형에 ◎ 표기

대분류	광학전자 영상	화합물 전처리분석	기계가공 시험	전기전자	데이터 처리	물리적 측정	임상의료
	◎						
용도	시험	분석	계측	가공	교육	기타	
				◎			
요청기관 유형	기업		대학		직접 R&D研		R&D서비스研
					◎		

나. 연평균 예상가동률

1) 외부 수요(수요조사결과 요약)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예상 수요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10개 기업이 연간 50시간씩 활용 예정 : 10*50 = 총 500시간

2) 장비 이용기업 수 : 00개(최저)~00개(최대)

※ 법인기준 이용예상기업 수 기재

3) 장비 예상가동률 : 00%(최저)~00%(최대)

※ 수요조사 결과와 내부 활용계획을 고려한 실제 예상 가동률을 산정
※ 장비유형·용도·기관유형별 적정가동률을 기반으로 예상가동률 범위 제시(최저 ~ 최대)

$$\text{가동률(\%)} = \frac{\text{연간가동시간 (실질가동시간+부대시간)}}{\text{연간가동가능시간 (2,000시간 - (성능향상·검교정·고장수리·시험가동시간))}} \times 100$$

※ 연평균 예상가동률은 장비의 실제 가동시간이 연간 표준장비가동가능시간(2,000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단, 전처리·후처리 등 장비 가동을 위해 소요되는 부대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하고, 시험가동, 고장 수리, 검교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연간 표준장비가동가능시간에서 제외
※ 가동률 산식을 작성하고 산정 근거를 자세히 제시할 것

2. 활용방식

※ 장비도입 후 활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사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근거 제시)

3. 장비관리자

- ※ 담당 장비명은 해당 장비관리자가 관리하는 모든 장비를 적을 것
- ※ 만약 장비관리자가 없거나, 장비관리자 추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단히 명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성명	소속	전공	신규 ^{주)} /경력	담당 장비

주) 신규채용인력의 경우 향후 6개월 이내의 채용계획을 포함

4. 유지보수 계획

※ 무상유지보수 기간 및 무상기간 이후의 유지보수 계획, 소모품비용 조달내용 등 장비구축 후 3년간의 계획 제시

5. 수요자 중심의 공동활용 계획

IV. 장비사양 및 가격의 적정성

1. 세부사양 및 가격비교

구분	수행기관이 목표로 하는 장비사양	검토대상장비 A	검토대상장비 B	검토대상장비 C
사양				
가격 (천원)				
차이				

2. 업그레이드 용이성 및 타장비 호환성(소프트웨어 포함)

3. 국산장비 검토(외산장비 구축일 경우만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 작 사/ 모 델 명	/	
		영문		장 비 가 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양					
	자체 검 토 의 건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사용

V.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설문지, 수요조사 보고서 파일은 i-Tube(www.itube.or.kr)에 심의요청시 첨부

1. 수요조사 개요

※ 수행기관에서 실시한 수요조사방법(조사방법(전화, 이메일, 인터뷰, 인터넷 등), 대상수, 응답수, 조사 기간 등) 간략하게 기술

2. 장비별 수요

- ※ 장비별 수요 요청 업체 현황
- 수행기관이 제시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기관)를 가,나,다 순으로 모두 기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업체명에 '없음'으로 표시

업체(기관)명	지역	주요 생산품	사용목적	홈페이지(연락처)
(주)평화	충남 서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책자, 기타 자료에 나와있는 생산품.	동 장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적어주세요	-http://www.ph.co.kr(041- XXX-XXXX)
평화공조	대구	컴퓨터용 광마우스	동 장비를 이용하여 광마우스의 센서정밀도를 측정	-http://www.peace.co.kr (대표전화 : XXX-XXX-XXX)
평화기계	경북 마산시			

[첨부] 수행기관 자체검토의견서

수행기관 자체검토의견서

1. 심의대상

도입 장비명	도입가격(예상)
	천원

2. 신청기관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총연구개발기간 (당해년도)	20 . . . ~ 20 . . . (개월) : (20 . . . ~ 20 . . .)

3. 검토의견

구분	내용	비고
장비구축의 타당성	- - 가동률 : %(수행기관제시)	
중복성	동일기관	
	타기관 (인근지역)	
	전국분포	
장비특성		
장비관리자 확보		
수요조사 및 R&D활용성		